2.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보건의료정책과장 : 강진용☎2133-7505 보건정책팀장 : 백명철☎7507 담당 : 이소정☎7556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절차 개선 (보건의료정책과, '25.8.7.)	□ 현 황 ○ '25.6.21.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·시행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시 시·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야 함 - 시·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는 적정 병상 수급·관리와 개설요건 관리 강화 목적으로 도입 □ 문제점 ○ 적정 병상 수급 관리와 개설요건 관리 강화 목적으로 도입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병상수 증가와 무관한 개설자, 진료과목, 의료기관 명칭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무화하여 처리기간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행정 효율성 저하 초래 - '25.6.21. 이전에는 의료기관 변경허가 시 사전심의·본심의 없이 담당공무원의 법령 적합 여부 검토를 통해 허가 처리 □ 건의내용 ○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과 관계없는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허가는 시·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 생략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 건의 □ 관련 규정 ○ 의료법 제33조(개설 등)	보건복지부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2. 지역외상센터 지정을 위한 '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' 건의 (보건의료정책과, '25.9.5.)	**□ 현 황** ○ '19년 서울시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(20.4%) 전국 평균(15.2%) 보다 높음 ○ 서울 지역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('23. 7. 개소)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, 한 개 기관이 해당 권역의 최종치료 수요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○ 권역외상센터를 보완하며 권역별 분담할 수 있는 기관인 서울시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 4개소를 지정 운영 중 **□ 문제점** ○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는 「서울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지정 ○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외상센터의 역할을 수행 중이나, 권역외상센터에 적용되는 예산 지원·응급 의료행위 수가 적용 및 진료비 산정특례 적용 불가 - 참여 병원의 운영 어려움 가중 및 치료환자의 민원 발생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 호소 **□ 건의내용** ○ 응급의료법 제30조의3 제2항에 따르면 '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'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,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이 하위 법령(시행규칙)에 제정되어 있지 않음 - 지역외상센터 지정 기준·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해당 조문의 신설을 건의	보건복지부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3. 중증외상환자 진료관련 수가 적용 개선 건의 (보건의료정책과, '25.9.8.)	**□ 현 황** ○ '19년 서울시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(20.4%) 전국 평균(15.2%) 보다 높음 ○ 서울 지역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('23. 7. 개소)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, 한 개 기관이 해당 권역의 최종치료 수요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○ 권역외상센터를 보완하며 권역별 분담할 수 있는 기관인 서울시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 4개소를 지정 운영 중 **□ 문제점** ○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는「서울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지정 ○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외상센터의 역할을 수행중이나, 권역외상센터에 적용되는 예산 지원·응급 의료행위 수가 적용 및 진료비 산정특례 적용 불가 - 참여 병원의 운영 어려움 가중 및 치료환자의 민원 발생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 호소 **□ 건의내용** ○ 권역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진료수가 및 산정특례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중인 다른 의료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정을 건의함 - 권역·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 권역외상센터와 동일한 진료수가 및 산정특례 적용	**보건복지부**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4. 긴급치료센터 진료 관련 수가 적용 건의 (보건의료정책과, '25.10.24.)	**□ 현 황** ○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증환자를 분산하여 중증응급환자 적시 치료를 도모하고, 경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야간·휴일 진료기관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**□ 문제점** ○ 서울시에서는 긴급치료센터(UCC)를 도입하여 24시까지 경증응급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, 제도나 수가 지원 없이 지속적인 운영과 확산이 어려운 상황 **□ 건의내용** ○ 긴급치료센터의 야간·휴일 진료 건강보험 수가 지원 - 평일 18~24시, 토·일·공휴일 9~24시 진료한 환자에 대한 수가 가산 **유사사례 – 달빛어린이병원** o 주관부서 : 보건복지부(지정권자 : 시·도) o 주요역할 :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 외래 o 운영기관 : 전국 104개소(서울시 14개소) ※ '25.1월 기준 o 운영지원 : 운영비 및 수가 지원 ※ 운영시간에 따른 차등지원	**보건복지부**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5.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의 통합돌봄 관련 기능 및 역할 신설 건의 (보건의료정책과, '25.11.7.)	**□ 현 황** ○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○ 돌봄통합지원법 시행('26.3.)을 앞두고 보건의료,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 확대가 요구됨 **□ 문제점** ○ 보건소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서비스에 더해 통합돌봄의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이 확대·강화될 예정 ○ 보건소 설치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에는 통합돌봄 수행과 관련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부재한 상황 **□ 건의내용** ○ 지역보건법에 통합돌봄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규정한 조항을 신설 -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, 건강관리 및 질환 예방 서비스 제공과 연계에 관한 사항 **□ 관련 규정** ○ 지역보건법 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	**보건복지부**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6.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사업 개선방안 건의 (보건의료정책과, '25.11.7.)	**□ 현 황** ○ 서울시는 '15년 11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병원 간 이송을 위해 서울형 이동형 중환자실(SMICU) 운영 ○ 운영현황 - (시설) 4개 권역(동북, 서북, 서남, 동남)에 특수구급차 4대 배치 - (인력) 4개팀 60명(1팀당 15명) - (예산) '25년 4,399백만원(시비 100%) **□ 문제점** ○ (재정부담 편중) 사업의 수혜자는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이나 재원은 서울시만 부담 - '24년 서울시민의 이용 비율 52.6% ○ (낮은 이송처치료) SMICU는 전문의가 동승하여 고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나 이송처치료가 현행 규정상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는 특수구급차와 동일하게 적용 **□ 건의내용** ○ 공익성·시급성이 매우 높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 - 국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- 이송 과정 중 제공되는 의료진 전문처치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 ○ 수도권 광역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수도권응급이송협의체 구성 및 보상체계 마련 **□ 관련 규정** ○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	**보건복지부**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7. **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법령 개정 건의** (식품정책과, '25.8.8.) ※ 강남구 건의사항	□ **현 황** ○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는 보조(지원)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됨 □ **문제점** ○ 자치구 구유 재산을 이용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무상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 □ **건의내용** 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□ **관련 규정** ○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비용의 보조)	**식품의약품안전처**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8. 일차의료 방문진료 및 장기재택의료 참여기관을 공공병원까지 확대 건의 (공공의료과, '25.10.20.)	**□ 현 황** ○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- (내용)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 대상 직접 방문진료의료서비스 제공 - (참여기관) 의원, 지방의료원 등 ○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- (내용) 거동 불편한 장기 재가 요양 수급자 대상 방문형 의료-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- (참여기관) 의원, 보건소, 지방의료원 등 **□ 문제점** ○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저조로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수요 대응에 한계 -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사업 참여는 3.0% 불과('25.6월) ○ 현 지침상 공공병원은 대상기관 누락으로 참여 불가하여 '통합돌봄' 확대 대응에 공백 발생 - 서울시 7개 시립병원 대상기관 미포함 **□ 건의내용** ○ 대상기관에 공공병원도 포함하도록 지침 개정 - (현행) 의원, 보건소, 지방의료원 ⇒ (개정) 의원, 공공보건의료기관 ※ 공공보건의료기관 : 지방의료원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(시립병원 등) 포함 **□ 관련 규정** ○ 일차의료 방문치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(보건복지부) ○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(보건복지부)	**보건복지부**

※ 2025년도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추진경과 보고

ㅇ 제328회 임시회 보고 ('25.3.)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추진경과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건의 (식품정책과, '24.11.26.) ※ 식품의약품안전처	○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「식품진흥 기금 사업」 제2조 대상 사업에 생계형 자영업자의 운영을 위한 용도 지원 근거 신설 건의	○ 회신 / 불수용 - 생계형 자영업자 운영 지원은 「식품위생법」상 기금 설치 목적에 부적절 의견('25.3.6.)

ㅇ 제331회 정례회 보고 ('25.6.)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추진경과
맞춤형 화장품 판매 규제 완화 건의 (보건의료정책과, '25.3.28.) ※ 식품의약품안전처	○ 「화장품법」에 화장품 소분 판매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삭제	○ 미회신 - 관련 내용 지속 모니터링
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제도 개선 건의 (보건의료정책과, '25.4.29.) ※ 식품의약품안전처	○ 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」에 오남용 의심 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건의 ○ 자가처방 제한 마약류 품목 확대	○ 미회신 - 식약처에서 의료기관 대상 마약류 처방시 투약 내역 확인토록 권고 * ADHD 치료제('25.6.), 식욕억제제('25.12.)
청소년 마약류 중독자보호 제도개선 건의 (보건의료정책과, '25.4.29.) ※ 여성가족부	○ 「청소년보호법」에 청소년 마약류 투약자의 상담 및 치료·재활 의무규정 조항 신설	○ 미회신 - 경찰과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치료·재활 독려 추진
가임력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 건의 (건강관리과, '25.5.2.) ※ 보건복지부	○ 보건복지부 고시 「건강검진 실기기준」에 가임력 검사 (난소기능검사, 부인과 초음파, 정액검사 등) 추가	○ 회신 / 불수용 - 가임력 검사는 특정 질환 발견을 위한 항목이 아니라 별도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('25.8.28.)